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0. 03.

신 구 대 학 교

목 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2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2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2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견 수렴]	3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신구대학교(이하 '본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
- 시설물 보호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우촌관	74	건물내부 및 주차장
실습관	7	건물내부
서관	9	건물내부 및 후문
서관증축	7	건물내부
동관	5	건물내부
국제관	39	건물내부 및 주차장
산학협력관	12	건물내부 및 주차장
창업관	5	건물내부
남관	4	건물내부 및 외부
복지관	14	건물내부 및 외부
체육관	17	건물내부 및 외부, 정문
학생창업관	6	건물내부 및 외부
우촌학사	55	건물내부
합계	254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이름	직위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사무행정처 (시설관리팀장)	손한건	팀장	031-740-1282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시설관리팀	박태훈	팀원	031-749-1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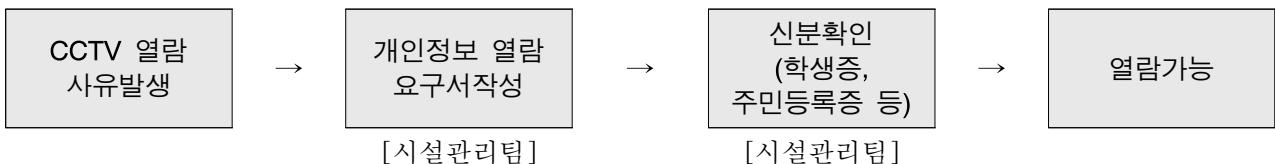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연락처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각 건물 랜실 및 방재실	031-749-1286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열람 확인 방법



2. 정보주체 열람신청 장소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장소	연락처
시설관리팀	031-749-1286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정취
- 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요청 후 기관 근무여부 확인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0년 04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CCTV 영상물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p>「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존재확인)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신구대학교 총장 귀하</p>		